

의안번호	2213466
의 퇴 인	이연희 의원
회 답 일	2025. 10. 30.
추 계 번호	25F548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 양수에 대하여
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6조 제10항 제1호 다목 신설 (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)	○ 제10항 제1호 다목 신설하여,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 적용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인화물자동차운송 사업을 양수(상속 또는 증여는 제외한다)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조 제10항 제1호 다목 신설 (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에 대한 세수 감소 효과가 예상됨
 - 개정안은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2호¹⁾의 개인화물자동차운송 사업을 양수(상속 또는 증여는 제외한다)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는 사업에 추가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자 함

1)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2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, 시행령에 별도 위임된 사업은 없음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개인화물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창업일시 및 지역, 창업자의 연령, 벤처기업 여부, 5년간 발생한 수입금액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○ 세법상 ‘주된 업종’은 각종 세제상 공제·감면을 적용하는 요건으로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조제3항에 의거 조특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, 「통계법」 제22조²⁾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

- － 현재 11차 표준산업분류³⁾와 2024년 귀속 업종코드⁴⁾를 살펴보면 대분류 ‘운수 및 창고업’ 총 85개에서 중분류 ‘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’ 51개, 세세분류 ‘개인화물자동차운송업’은 총 12개로 구분되나,
- － 국세통계포털상 소득세의 경우 대분류인 ‘운수 및 창고업’으로, 법인세의 경우 중분류인 ‘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’으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등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나, 세세분류인 ‘개인화물자동차운송업’으로 별도 구분하여 제공되지 않음

[표 1] 세목별 사업자 수 및 수입금액 등: 법인세 및 소득세, 2020~2024년
(단위: 개사, 명, 억 원)

신고연도		2020	2021	2022	2023	2024
법인세 ¹⁾	법인 수	12,983	13,325	13,695	14,066	14,330
	수입금액	588,945	548,529	626,663	738,103	731,999
	소득금액	19,638	15,206	24,862	27,204	25,226
귀속연도		2020	2021	2022	2023	
소득세 ²⁾	사업자 수	459,029	491,424	542,118	578,952	
	총수입금액	373,694	415,501	472,522	499,066	
	소득금액	44,309	48,583	54,445	57,966	

주: 1) 법인세의 경우 중분류인 ‘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’으로 분류되고, 총 51개로 구성

2) 소득세의 경우 대분류인 ‘운수 및 창고업’으로 분류되고, 총 85개로 구성

자료: 국세청, 「국세통계포털」, 각 연도

2) 「통계법」 제22조 【표준분류】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, 직업, 질병·사인(死因)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·고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3)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고시(통계청 고시 제2024-2호), 2024.1.1. 게시

4) 홈택스,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시 신고도움 자료 중 「기준·단순경비율(업종코드)」
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‘개인화물자동차운송업’을 영위하는 개별기업의 창업일시 및 지역, 창업자의 연령, 벤처기업 여부,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발생한 수입금액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, 정보가 부재하여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－ 현행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창업일시와 지역 및 창업자의 연령,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,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발생한 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감면율이 상이하나,
 - － ‘개인화물자동차운송업’을 영위하는 개별기업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상기 자료가 부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수인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수인	02-6788-4839	suin2025@assembly.go.kr